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3年 12月 17日 (金) 午後1時30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 議事日程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_\_\_\_\_ 1 面

(13시30분 개의)

○ ~~委員長 李相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 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3시31분)

○ ~~委員長 李相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신교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교선  
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  
성되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3  
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당연대상기관인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하였  
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  
원회 위원전원과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4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 장소는 1993년 12월 1일 군  
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대상사무 청취와  
질의답변으로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  
사회진흥과,재무과,사회과,가정복지과,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993년  
12월 2일은 환경보호과,산업과,지역경제  
과,축산과,건설과,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하였으며, 1993년 12월 3일은 산림과,  
민방위과,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읍면중  
평창읍과 방림면,대화면에 대해서 감사  
실시 대상사무인 지방자치법제9조에 명  
시된 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역으로는  
기획실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추진의 여비  
지출의 건의 4건,  
문화공보실에 있어서는 유선방송허가및  
지도감독 실시의 3건, 내무과는 93년도  
1년이내의 전보자 현황및 전보사유의 6  
건, 사회진흥과는 92년부터 93년까지 마  
술안길 포장사업 추진사항등 6건, 재무  
과는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징수부진사유  
의 4건, 사회과는 위생접객업소 위생검  
사 실태및 행정처분사항 3건, 환경보호  
과는 농촌쓰레기장 부족대책및 환경미화  
원 관리사항의 4건, 가정복지과는 공설  
묘지 설치사업추진내역의 2건, 산업과는  
92년부터 93년도까지에 대한 농지일시전  
용내역에 대한것 의 6건, 지역경제과는  
주진농공단지운영실태와 휴폐업내역의 3  
건, 산업과는 부실초지관리및 현황대책  
의 4건, 그리고 건설과는 제설장비구입  
사용계획의 6건, 도시과는 진부상수도사

업추진계획의 6건, 산림과는 숲잎혹파리 방제사업내역의 6건, 민방위과는 읍면소방차운전원 배치내역의 1건, 보건의료원은 92년부터 93년도 수진환자현황및 자체교육실시내역의 3건, 농촌지도소는 농어민후계자선정경위등 3건, 읍면은 취로사업집행내역의 1건으로 총 92건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처리의견증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군수포괄사업은 단일사업의 부대시설등에 집행된것이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것 외에 30건으로서

1. 군수포괄사업선정은 단일사업의 부대시설등에 집행된것이 있어서 개선이 요구됨.
2. 각종사업의 부대비집행을 여비로 지출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예산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람.
3. 누적되는 지방채의 상환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는 관리를 하기 바람.
4. 공보신문은 중앙지를 줄여서 지방지를 늘리는것을 방안을 검토하고 우편배부시 수취인에게 필착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5. 문화재 관리상태를 재점검해서 보존가치여부를 판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6. 공무원의 전문성 제보와 업무연찬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공무원 창안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바람.

7. 공무원이 인사불만이나 직무태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충 상담제를 활성화 시켜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기진작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8. 군민대상 포상자 선정은 전 군민이 공감할수 있는자로 심도있게 심의하고 공적이 빈약할경우 제외하는등 신속성 있게 운영이 되기 바람.

9. 행정쇄신추진은 당초보다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 자문위원회 운영등 성과를 높일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방안 강구를 요함.

10. 봉평 소도읍정비는 당초계획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94년도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람.

11. 군청직장팀인 씨름은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시장사용토 수입이 극히 저조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개정등 제반대책을 강구 현실화 하여 지방세

수입증대에 기여하기 바람.

13. 지방세및 세외수입 미수납분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 추진바람.

14.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기위생검사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형식적인 검사가 되고 있어 군이 직접 시행하는등 필요한 대책이 요구됨.

15.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기 바람.

16. 읍면의 환경미화원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업무량을 감안한 정원재조정및 증원이 검토되어야 함.

17. 도암면 송천은 삼양축산, 한일농산 등 기업축산 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18. 농지일시전용 허가시 법적허가조건이 되어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지역주민 의견수렴및 관계부서간 협의로 심도있는 검토후 허가를 요함.

19. 가정용 액화석유가스는 군에서 고시한 가격을 반회보등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일부 판매소에서 월정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됨.

20. 가축방역사업은 실질적인 방역이 될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 바람.

21. 초지는 초지보완사업 계획에 의해 최대한 보완해 나가고 기능이 상실된 초지는 산림으로 환원하거나 농지로 전용해주는 대책강구가 필요함.

22. 폐천부지 매각실적이 전무하여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었음. 94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23. 70년대 고속도로변 농가주택이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등기를 할수있는 필요한 조치가 요망됨.

24. 송정택지는 조속한 시일내 분양이 완료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 하여주기 바람.

25. 임도시설은 지역여건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평-도사간 임도시설 하자보수는 조속한 기간내 조치하기 바람.

26. 명창읍 상리 골프 연습장 산림훼손원상복구가 현재까지 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7. 1가정 1소화기 갖기실적이 극히 부

진하여 화재초동 진화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가정에서 소화기를 준비할수 있도록 계도홍보가 강구되어야 하겠음.

28. 보건의료원은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운영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공직자로서의 친절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람.

29. 농민후계자 선발에 많은 여분이 대두되고 있음. 향후 영농정착 의욕이 강하고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을 선정하는등 엄정한 선발로 사전민원을 해소하기 바람.

30. 이장 수당은 매월 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읍면에서는 불규칙하게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됨.

31. 읍면 개발위원회는 조직및 운영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운영이 형식적인 단체로 향후 번영회와 연계해서 생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이상 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며 건의사항으로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그 단체의 자산액을 키워서 관에 의지 하지 않도록 지원을 줄여가기 바라는것 외에 10건으로 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과 미흡한 부분, 향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디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REDACTED]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보고를 받은바 있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한 사항 이므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45분 산회)

○ 出席委員

委員長	李 相 薰
幹 事	朴 容 泰
委 員	李 致 玉
委 員	朱 泰 元
委 員	金 樂 雲
委 員	郭 文 春
委 員	金 鍾 永

○ 委員 아닌 議員

議 長	韓 榮 一
-----	-------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 教 善
議事係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 234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 捺印함.

1993年 12月 18日

委員長 李 相 

專門委員 辛 教 